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건설혁신과-

시행일 2021년 8월

수신 (주)조안종합건설 대표 천한영 귀하(귀중)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조안종합건설 대표 천한영			건축공사업 01-428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23, 제6층 608호(도곡동, 인스토피아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p>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보증가능금액) 미 보완</p> <p>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로 영업정지(2021.2.1.~2021.6.30.)후 처분종료일(2021.06.30.)까지 미달사항 미보완</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건설혁신과-16864호(2020.12.30.)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p>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2</p> <p>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p>					
6. 청문 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건설혁신과(건설업관리팀)	담당자	이유경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전화번호	02)2133-8105
	일시	2021.9.3.(금) 13:00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청문실(엘리베이터 5, 6번 이용)				
	청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주무관
	성명				박지영	

서울특별시청

210mmx297mm(일반용지 60g/m²)

<청문시 유의사항>

1. 귀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사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